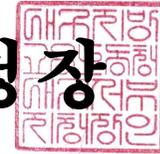


##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

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불인정 통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 송달하고자 하였으나, 폐문 부재의 이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.

#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장



2022. 8. 24.

1. 건명: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
2. 근거: 고용보험법 제4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,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공시송달 내용
조*식	1996.2.22	경북 칠곡군 구상길(이하생략)	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	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수급자격 불인정	동 서류를 2022년 7월 20일, 7월 29일에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 불가(폐문부재)
김*규	1967.5.5	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로(이하생략)	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	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수급자격 불인정	동 서류를 2022년 8월 3일, 8월 12일에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 불가(폐문부재)
박*기	1979.10.27	경북 칠곡군 석적읍 석적로(이하생략)	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	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수급자격 불인정	동 서류를 2022년 7월 22, 8월 5일에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 불가(폐문부재)

4. 공고기간: 2022.8.24. ~ 2022.9.7.(15일간)

5. 기타 사항은 칠곡고용센터 취업지원팀 손진숙 주무관(☎054-970-190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